

대전지방법원 2021. 10. 5 선고 2020나121227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전지방법원 2021. 10. 5 선고 2020나121227 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18가단229127 판결

전 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효상

피고, 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지수, 김은지

변론 종결 2021. 7. 20.

판결 선고 2021. 10. 5.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18가단229127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1,151,356원 및 그중 42,730,440원에 대하여는 2020. 7.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면 제7행부터 제5면 제11행까지의 부분('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C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미지급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① C의 채권자인 F은 C를 대위하여 피고를 포함한 제3채무자들을 상대로 각 미지급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법원은 F의 피보전채권액이 전체 피대위채권액보다 적다는 이유로, 피고를 포함한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채권자대위청구 중 일부분을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소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② 그러나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소송물은 피보전채권 금액이 피대위채권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피대위채권 중 피보전채권 금액의 범위로 한정되어서는 아니되고, F도 피대위채권 총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의 피보전채권에 근거하여 미지급 매매대금 일부청구라는 점을 명시하지 않은 채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매매대금 '전부'의 지급을 구하였으므로, 위 소송의 기판력이 미치는 소송물은 C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매매대금 '전부'이다.

③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전소 확정판결과 소송물이 동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1) F은 2016. 7. 15. 피고 등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6가합104122호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대전지방법원은 2019. 7. 10. 'F의 피고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2) F은 2019. 7. 24. 위 판결에 대하여 대전고등법원 2019나13566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 계속 중에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1,205,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였다(F은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인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도 그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3) 대전고등법원은 2020. 4. 29. 아래와 같은 이유로 'F의 피고에 대한 항소 및 항소심에서 확장한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F이 항소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중 437,684,530원에 대한 청구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F에게 437,684,53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이하 '선행판결'이라 한다)하였다. 선행판결은 2020. 5. 19. 확정되었다.

① 주위적 청구(사해행위취소)와 관련하여, F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F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② 예비적 청구(채권자대위청구)와 관련하여, 피보전채권으로 F의 C에 대한 채권이 1,259,592,540원, 피대위채권으로는 C의 피고 등 제3채무자들에 대한 미지급 매매대금 채권이 피고에 대한 522,5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1,503,679,150원 각 인정된다.

③ 그런데 F의 피고 등 제3채무자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 중 피보전채권액 1,259,592,540원의

범위를 초과한 청구 부분은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F이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피대위채권의 이행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의사로 다수의 제3채무자를 상대로 예비적 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제3채무자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인정되는 피대위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각하하는 것이 예비적 청구에 관한 F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④ 따라서 피고는 F에게 437,684,530원(= 피보전채권액 1,259,592,540원 × 피고의 C에 대한 미지급 매매대금액 522,500,000원 ÷ 제3채무자들의 미지급 매매대금 총액 1,503,679,1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F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 부분은 당사자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6,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판결의 기판력은 주문에 포함된 소송물인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 대하여 미치는 것이다(대법원 1970. 9. 29. 선고 70다1759 판결 참조).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경우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채권액을 특정하여 그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청구 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그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소장, 준비서면 등의 기재뿐만 아니라 소송의 경과 등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43170 판결,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3다9616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채권자대위의 소는 본질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피보전채권액에 한하여 적법하게 제기될 수 있으므로, 피대위채권액이 피보전채권액보다 크다면 채권자는 그중 피보전채권액에 한해서만 적법하게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선행소송에서 F은 피고뿐만 아니라 다수의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자대위청구를 하였고, 심리 결과 피대위채권액의 합계가 피보전채권액을 초과하게 되었는데, 선행판결은 F의 청구를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피대위채권의 이행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고 피보전채권액을 피대위채권의 존재가 인정되는 피대위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인용하고 나머지는 소 각하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소송에서의 당사자의 의사, 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보면, 선행소송에서 F의 청구는 피보전채권액에 한하여 청구하는 명시적인 일부청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선행소송에서 F이 C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인용판결을 받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84,815,470원의 미지급 매매대금 채권 부분(이므로1) , 양 소송의 소송물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인 이 사건 청구에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제5행의 "2020. 7. 23."을 "2020. 7. 24."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신순영

판사윤이진

판사안영화

1) 한편, 선행판결 중 나머지 84,815,470원의 미지급 매매대금 채권 부분에 대한 소 각하 판결은 소송판결로서 그 기판력은 F과 피고 사이에서만 그 판결에서 확정된 소송요건(F의 피보전채권)의 흠결에 관하여 미칠 뿐이다.